

# 예 산 총 칙

201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63,773,133	4,913,194
일반회계	138,808,907	4,164,267
특별회계	24,964,226	748,927
기타특별회계	24,964,226	748,927
의료급여기금	290,887	8,727
주거환경개선사업	524,000	15,720
주차장	23,840,620	715,219
지하수관리	287,919	8,638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20,800	62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065,82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